

긴급정책토론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 2020.7.1(수) 오전10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19층)
- 주 최 |  바른사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경제포럼. 지배구조포럼

본 토론회는 바른사회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 순 서 ————— ■

■ 사 회

- 김 태 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발 제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토 론

- 김 정 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박 인 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前건국대 교수)
- 최 원 목 (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화여대 교수)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목 차 ■

■ 발 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9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토 론

김 정 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17
박 인 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前건국대 교수).....	19
최 원 목 (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화여대 교수)...	23



■ 긴급정책토론회

발 제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월 26일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10 대 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과연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검찰은 곧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수년 전부터 지켜봤던 필자의 소견을 몇자 피력해 보고자 한다.

본래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둘로 나누어 ① ‘뇌물공여혐의’와 ②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주가조작)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혐의(회계부정)’으로 정리했다. ① 뇌물공여혐의에 관하여는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353일간 옥살이를 했고 2018년 2월 출옥했다. 대법원을 거쳐 지금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②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회계부정)’ 사건은 **출옥 후에 비로소 수사를 시작해** 1년 7개월간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조사를 미루었다.

그런데 이제 뇌물공여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서야 뒤늦게 피의자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사건으로 4~5년씩이나 계속 수사를 끌어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니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회계부정사건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해석문제로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이다. 사실 인정보다는 법리적 판단이 문제된다.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거인멸 사건을 기소할 때 그 전제가 되는 회계문제가 법리상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함께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세를 조종하여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혐의를 보자. 삼성물산이 무슨 코스닥 피라미 회사도 아니고 **초대형 회사의 주가를 어떻게 조작하나**. 악재만 공시하고 호재는 감추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주가를 낮추기 위한 사례로 호주 광산사업 포기를 든다. 그러나 만약 광산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더라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호주 로이힐 철광 개발사업에서 8천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광산 관련 사업에 대한 야심을 2016년 3월에 접었다. 삼성물산은 2013년 광산 재벌 지나 라인하트가 이끄는 호주 기업 행콕 프로스펙팅으로부터 로이힐 광산 개발 사업을 56억 달러(약 6조 4천억원)에 수주, 철광석을 처리하는 플랜트와 수출을 위한 항만시설, 철도연결망의 건설을 진행해왔다. 삼성물산의 **광산 개발사업에 진출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10여년에 걸친 자원 개발 붐이 끝나가는 무렵에 로이힐 광산 개발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경영자의 경영실패로 인한 주가하락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는 것이니 세상의 경영자는 경영실패는 곧 형사처벌의 위험에 몰리지 않겠는가. 또한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불법으로 판단하기는 선부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5월 13일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받았다. 발주처는 공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물산이 받은 LNTP도 이에 대한 것이었다. LNTP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시하면 자칫 허위공시가 될 수도 있다.

합병비율이 부당하다는 것도 터무니없다. 이 비율은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 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이와 같이 강행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합병했는데도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합병하겠다고 나서겠는가. 한국 M&A 시장은 죽어버린다.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소 등을 통해 구제될 수 있는 민사문제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문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례가 없다.

회계부정 문제도 그렇다. 미국회사인 바이오젠이 지분 1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를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있어 삼성바이오의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다. 그 후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지분율은 91.2%이며, 바이오젠은 8.8%로 지분이 떨어졌다. 그동안 바이오에피스의 유상증자에서 바이오젠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래가 불투명한 회사에 돈을 계속 넣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복제약 시판에 성공하자 바이오젠은 2015년 5월 콜옵션을 실행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와 지분을 49.9%(50%-1주)까지 취득했다. 이제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지분 85%를 가진 회사를 가까운 ‘종속회사’가 아니라 먼 ‘관계회사’로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분식회계일 것이다. 종속회사로 처리해야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생긴다.

여기서 종속회사란 “지배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법률상으로 서로 독립적

이더라도 재무적으로 한 몸인 ‘연결 실체’로 본다. 이에 비해 관계회사란 “다른 회사의 유의적 영향 아래 놓여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회사”를 말한다. 종속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경영권 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완전한 지배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지는 않는 회사로서 재무적으로도 **별개의 몸으로 보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가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분류를 변경할 때는 **K-IFRS 1110호에 따라 공정가치(장부가액에서 감사상각 누계액 등을 제외한) 취득가액이 아니라 평가 당시 시점에서 평가한 시장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종속회사의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평가되던 것이 관계회사로 전환되면서 **공정가치(시장가치)**로 평가되면 가치가 올라간다. 금감원과 검찰은 뒤늦게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있어 종속회사로 처리한 것은 본래 금감원이 승인한 건이다. 갑자기 참여연대 출신 금감원장이 임명되더니 이것을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했다면서 임명 2주 만에 물러나기까지 유일하게 한 일이 이 사건 재조사와 검찰에 고발한 일이다. **미국도 일본도 도입하지 IFRS를 한국만은 2011년에 무리하게 도입되었고, 그 시행 1년차인 2012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문제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자체가 회계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감독자는 수범자(守範者)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거래약관상 모호한 규정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도입 1년차에 아직 IFRS에 대한 해석론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한 결과로 IFRS에 대한 무지가 빚은 촌극이 연출된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글로벌 회계법인들과 제휴한 3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으며, 이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것이 다수 회계학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일부의 의혹 제기와는 달리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요구로 협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한다. **결정적인 것은 합병 주총은 2015년 7월에 있었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이보다 늦은 2015년 12월에 있었다는 것이다.** 회계방식 변경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달렸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제적 문제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소송)도 딜레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삼성 물산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

입하여 최대 9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한 진술에 따르면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총 7억1800만달러(약 839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분 5억 8130만 달러에 이자 1억 3670만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대통령과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엘리엇이 진술서에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2019년 5월 3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중재재판부에 “국민연금은 합병 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국제 분쟁기구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유죄 추정의 기소가 이뤄지면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미 뇌물공여죄 기소와 판결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부회장이 무슨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모양이지만, 올라오는 보고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인지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몰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윗사람은 거의 다 범죄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거대 권력과 금권에 대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해 왔다고 본다. 그것이 한국 검찰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다. 그런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본다.

심의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변호사 등 법률가도 여럿(7명)이 참여했고, 회계 전문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전문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모든 정보를 충분히 열람하고 판단할 시간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의 여론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다. 국민여론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스스로 만든 제도를 이 제도를 견어한다면 자존심이 아니라 아집(我執)이¹⁾ 될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제 9건의 사

1) (명사)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출처: 네이버 사전.

례가 축적되었다. 이 제도가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 불과한 아직은 아니다.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끝)

■ 긴급정책토론회

토론

- 김 정 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박 인 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 최 원 목 정교모 공동대표/이화여대 교수

이재용사건, 분노를 버리고 진실을 보라

김 정 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10:3 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했다고 한다. 나는 이 사건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안타깝다. 법 집행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민재판식, 즉 법이 아니라 여론에 따른 재판이 되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들로 구성된 조직이어서 여론재판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검찰보다는 위원회의 편에 서고 싶다. 이재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사가 너무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이다.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는데 이재용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거다. 당시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합병을 통해 이재용은 합병된 삼성물산의 주주가 되었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도 확보하게 되었다. 합병의 과정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합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0.35 였다. 그 비율은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이전 한달간 각 회사 시가총액의 가중평균값으로 결정됐다.

숫자만 보면 제일모직에 비해 삼성물산 측이 불리해 보이지만 겉으로 실상은 아니다. 정말 불리하다면 주총에서 다수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주총에는 전체 주식의 84.7%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주식 중 70%가 찬성했다. 반대는 주로 외국인 주주들이 했다. 국내 주주들은 대부분 찬성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개인소액주주들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삼성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 제외해보자. 개인투자자가 전체의 24%인데 그들까지 매수할 수는 없다. 결과는 24% 소액주주 중 반대는 3%, 대다수인 21%가 찬성표를 던졌다. 대부분 찬성을 한 것이다. 합병은 주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합법적이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회계 장부가 조작되었다는 거다. 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뺄튀기 했다. 그럴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처리를 일부러 늦췄다. 이런 내용이다. 상세한 내용을 다 말하기는 시간이 짧으니 이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견해를 요약해서 소개한다.

한국 회계학회는 2018.11.24 일 긴급 세미나를 열고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문제를 다뤘다. 결론만 요약하면 이렇다. 삼성바이오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에 맞게 제대로 처리를 했다. 그런데도 감독기관은 부당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새 회계기준인 IFRS는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원래 미국식 회계기준 GAAP를 사용해 왔다. 세부적 기준에 따르는 방식이어서 시장의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GAAP 대신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권고하는 IFRS, 국제회계기준을 택했다. GAAP 가 규정 중심이라면 IFRS는 원칙 중심이다. 그 원칙 아래서 회계작성자가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를 적어 넣으면 된다는 거다. 한국회계학회는 삼성이 그 원칙에 맞게 잘했다. 감사기관인 정부가 오히려 과도하게 간섭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IFRS 를 어떻게 쓰겠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인천대학교 교수이면서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지낸 홍기용 교수 같은 분은 아예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맞고 감사기관의 지적이 틀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데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이재용의 상속과정 전반을 들고 나와 문제를 삼고 있다. 그 감정을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과 별개의 차원이다.

또 하나의 눈 여겨 볼 정황은 시가총액, 즉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이다. 만약 이재용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삼바의 가치를 뺏튀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형편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6월 30일 현재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22조원인데, 문제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1조원이다. 모회사의 2배가 넘는다. 2016년 11월 상장 당시 16만원이던 주가가 6월 30일 현재 77만 5천원이 되었으니 4.8배나 성장했다. 그런 삼바를 품고 있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으니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번 이재용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주장과 검찰의 태도는 잘못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보다 오히려 참여연대와 검찰이 더 정치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이 참여연대 같은 정치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하기 보다는 한국회계학회를 비롯한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검찰의 현명한 선택

박 인 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 / 전 건국대 교수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그 효력

- 0 2020. 6. 26.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하여 출석 위원 13명 중 10 : 3의 의결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함.
- 0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원 15명)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대검 예규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제도와 유사함.
- 0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지검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하게 되는 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검찰총장에게 대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임.
- 0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그 결정 내용이 수사 검찰에 대하여는 구속적 효력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이 있음.

2.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 0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동안 3년 6개월 이상 박영수 특검팀과 서울지검은 이를 둘로 나누어서 이 부회장의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주가조작) 및 외부감사법위반(회계부정)’으로 분리하여 수사를 해 왔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0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뇌물공여혐의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거액의 승마용 마필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임.(결과적으로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뇌물죄의 공범)

0 이에 대하여는, 2016. 10. 27. 검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그 후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2016. 12. 1.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된 후 처음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결국 2017. 2. 17.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7. 8. 25.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됨.

0 다시 2018. 2. 5.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겨우 감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되고, 박영수 특검팀에 의하여 거의 1년간 구속되는 등 그 동안 약 3년 6개월간 68회에 걸쳐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음.(지금도 이 부회장은 대법원 재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0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주가조작) 및 외부감사법위반(회계 부정)’ 사건은, 이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로 출소한 후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운]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근 1년 8개월간 10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두고 임직원 등 경영진 110명 이상을 상대로 430회 이상 소환하여 조사하고, 50회 이상 삼성전자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그 동안 방대하게 축적된 수사기록만 20만 장에 이른다고 함.

[전 법무장관 조국 부부의 사건 수사와 비교]

0 그러면서도 막상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장기간 미루다가 다시 최근 2020. 6. 9. 검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15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의 기록 검토 끝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으로써 이 부회장은 재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추가 수사와 영장 재청구에 의한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 등 수사 과정이 남아 있게 됨.

0 위와 같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수사에 의한 뇌물공여 사건이 재판까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그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다시금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라는 한 개의 사건으로 3년 6개월 이상 장기간 검찰 수사를 끌어오면서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움.

* 그 과정에서 2020. 2. 4.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뇌물공여)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2019. 10. 이 부회장에게 특별히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한데 따른 것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지 외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 기구임)

* 그 후 2020. 5. 6.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회사 경영권의 4세 승계 포기과 무노조 경영 폐기, 준법경영 강화 등을 선언한 바 있음.(이 부회장 자녀들에 대한 경영권 승계 포기, 회사 내의 노조활동 허용)

3.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반응과 향후 검찰의 선택

0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집권 거대여당인 민주당과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 및 한겨레, 경향과 같은 언론 등 좌파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반(反)기업 정서’를 대변하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음

0 이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할 일부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누출하거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 볼 것처럼 수사 검찰을 상대로 위협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자가당착적임.

0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2018년 검찰개혁 차원에서 신설한 제도와 기구로서 그 동안 8차례 결정에 대하여 그 내용이 기소든 불기소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수사 검찰이 그 결정을 존중해 왔음.

0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수사 검찰이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임.

* 굳이 검찰이 강공책을 선택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재청구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절충적인 선택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기소의 유형 중 하나인 기소유예 결정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음)

0 검찰개혁을 위하여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무시하면, 당연히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추진하면서 마치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던 검찰개혁의 과제도 향후 동력을 잃게 됨.

0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돌발적인 탄핵사태를 계기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3년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사건에 더하여 별건으로서 주가조작과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하게 과잉수사일 뿐만 아니라 단지 재벌회사의 경영자라는 이유로 이 부회장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0 지난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국민적 통제라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까지 개혁하는 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최 원 목

정교모 공동대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개혁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뒤죽박죽 검찰개혁 열차가 교통신호까지 무시하며 달려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검찰 내에서 들린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개혁 방안으로 2018년 도입했다.

현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내세우며 중요한 순간마다 이를 방패막이로 삼거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자 포토라인을 없애버리고 별건수사 관행을 손보는 걸 개혁의 시작으로 포장했다. 권력형 비리로 수사 받는 최고위층 인사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의 역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또 다른 재계의 최고위층인 삼성 부회장을 기소하는 일이 목전에 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의 산물인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며 또 어떤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말인가.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이지 구속력 있는 판정이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심의위원들은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임명된다. 이러한 전문가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각 사안에 심의위원으로 임명한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심의위원에 대한 회피·기피 규정도 발동된다.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삼성의 압력이 작용했다면 모를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이 회피·기피 절차까지 거친 후 10:3으로 불기소 권고를 내린 걸 따르지 않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미 8차례의 심의위 권고가 있었고, 검찰이 이를 모두 수용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이 제도의 신뢰성은 확보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안다. 2017년부터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검찰권력이 특정 기업 때리기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국민적 우려다. 실제로는 검찰 개혁을 권력 장악이나 특정 기업 때리기의 채널로 삼아 이념 정치 실현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면서, 겉으로는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외쳐대는 이율배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권력을 독립시켜 헌법과 국가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제하는 게 진정한 개혁의 요체가 아닌가. 검찰개혁은 역사적 과제다. 조국식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이고 편의적 수단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이하 검사들이 푹푹 묻쳐 최선을 다해 수사한 이유는 개혁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개혁을 핑계로 한 이념적·보복적 물갈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 식의 이념적 사이비 개혁은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적폐청산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평검사들이 뽑고 검사 임면권은 검찰이 알아서 하게 다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는 더욱 확대하여 권고절차가 아니라 의무적 판정절차로 이참에 발전시켜야 한다. 정치권력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검찰수뇌부는 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들과 평검사들이 무서워서 절대로 부패하지 못할 것이다. 뒤죽박죽 검찰개혁 열차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도 생선을 잘 되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이 피해자다.

[illegible]



•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 **지배구조포럼**

2020. 7. 1.